

제 2358호
2015. 04. 15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
 편집인: 공 보 실 장 장 운 기
 전화: 3396-4965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- 공 고
- 제2015-266호 : 2015년 문화재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2
- 제2015-280호 : 서소문구역 제8-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4
- 제2015-281호 :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6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
 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65 / FAX.(02)3396-9024
- 구보는 수시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
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	
람													

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-266호

2015년 문화재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

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서울약현성당 내 다목적 용도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 25조, 같은법 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04월 15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관련근거

- 가.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나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- 다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라.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- 마.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·운영지침

2. 사업명 : 2015년 서울약현성당 방범·방재시설 구축사업

3. 시행자 : 서울특별시 중구청

4. 사업내용 : 문화재 보호를 위한 다목적 용도의 CCTV 설치

5. 설치장소

연번	주소	설치장소	설치대수	비고
	청파로 447-1 (중림동)	서울약현성당(사적 제252호) 일대	CCTV (9대)	

6. 공고기간 : 2015. 4. 16 ~ 2015. 5. 5(20일간)

7. 공고방법 : 중구 구보 및 중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게시

8. 의견제출장소 : 중구청 공원녹지과(문화재담당)

9.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공원녹지과(담당자 이승민 ☎02-3396-5883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-280호

서소문구역 제8-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9.6)로 재개발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428호(1978.12.29)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591호(1984.10.10) 사업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79호(2013.6.13)로 도시환경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 지정 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4-21호(2014.3.21.)로 사업시행 인가된 서소문구역 제8-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『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』 제3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.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(중구청 도심재생과, ☎02-3396-5774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합니다.

2015년 4월 15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- 가. 사업의명칭 : 서소문구역 제8-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나. 시행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0-13호 일원
다. 시행면적(m²)

구분	계	획 지	정비기반시설	비 고
기정	1,199.6	977.9	221.7	서소문구역 제6지구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(서소문동 58-52)
변경	1,208.7	977.9	230.8	

- 라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- 성 명 : (주)센트럴디벨롭먼트, 상진공영(주) / 대표 최대식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길 36
 - 마.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
 -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(해당 없음)
 - 사. 건축규모

구분	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연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층수 (지상/지하)	높이 (m)	용도
기정	977.9	584.40	14,233.40	59.76	1,099.70	23/5	99.8	숙박시설 (관광호텔)
변경	977.9	584.43	14,151.40	59.76	1,098.33	23/5	99.8	숙박시설 (관광호텔)

아. 공람내용 : 서소문구역 제8-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(변경) 신청내용

- 평면 조정에 따른 객실 수 감소(16실 감소), 외장재료 변경, 23층 건축계획 변경 등

자. 공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

차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74)

카. 관계도서 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)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-281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서울특별시 양여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,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부과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2015. 04. 15.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

1. 공고내용 :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대상자(사전통지내역)

대상자	주 소	재 산	점유면적 (㎡)	점유기간 (부과기간)	부과금액(원)
고유근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2로	서울 중구 신당동 432-2806	79	2014.01.01.~ 2014.12.31	2,944,480
서서운	서울 중구 다산로4길	서울 중구 신당동 366-305	4	2014.01.01.~ 2014.12.31	65,890
황인귀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31번길	서울 중구 신당동 432-1903	96	2014.12.02.~ 2014.12.31	315,490
김상모	서울 중구 동호로11나길	서울 중구 신당동 432-2421	6	2014.01.01.~ 2014.12.31	223,350
권성규	서울 중구 동호로11차길	서울 중구 신당동 432-1888	72	2014.01.01.~ 2014.12.31	2,782,080
임권수	서울 중구 동호로11차길	서울 중구 신당동 432-1903	68	2014.01.01.~ 2014.12.31	2,718,910
이종란	서울 중구 다산로5길	서울 중구 신당동 432-1435	94	2014.01.01.~ 2014.12.31	3,164,040
이옥희	서울 중구 동호로11바길	서울 중구 신당동 432-1186	1	2014.01.01.~ 2014.12.31	12,830
손명자	서울 중구 동호로11가길	서울 중구 신당동 432-1869	12	2014.01.01.~ 2014.12.31	431,130
홍영옥	대전 동구 용운로	서울 중구 신당동 432-2868	13	2014.01.01.~ 2014.12.31	452,710
송도웹스케어 네트웍스	서울 중구 다산로	서울 중구 신당동 372-127	11	2014.01.01.~ 2014.12.31	453,020

3. 공고기간 : 2015.04.16.~2015.04.30.(15일간)

4. 기타사항 :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분할납부를 원하실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및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주택과 (02-3396-570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

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, 의견이 있어 『서울특별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조례』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변상금 부과 통지내역				의견
소재지	점유면적 (㎡)	부과기간	변상금(원)	

기타의견(입증서류 등 첨부)

신청인 주 소 :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주민등록번호 :
전화 번호 :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

[별지 제19호의 3 서식]

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

점유재산의표시		분납형식	비고
소 재 지	점유면적(㎡)		
		년 회 분납	

분할납부 신청내역						
변상금 총 액 (원)	회차	납부일	변상금 (원)	연 부 이 자 (원)	합 계	비고
	1회					
	2회					
	3회					
	4회					
	5회					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」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
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※ 변상금의 분할 납부 50만원초과 : 6월 2회 분납
(연6% 분납이자) 100만원초과 : 1년 4회 이내 분납
 200만원초과 : 2년 8회 이내 분납
 300만원초과 : 3년 12회 이내 분납

년 월 일

신청인 주 소 :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주민등록번호 :
전 화 번 호 :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